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93호)

2024. 8.

교육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회부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1. 제안이유 ····· 1

2. 주요내용 ····· 1

3. 참고사항 ····· 2

Ⅲ. 검토의견 ····· 2

1. 개정목적 ····· 2

2. 주요내용 ····· 2

3. 검토의견 ····· 3

※ 참고자료 ····· 6

붙임 1. 개정조례안 ····· 6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7

붙임 3. 관계법령 ····· 9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1

붙임 5. 현행조례 ·····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4193호
○ 제 출 자 : 김영현 의원 외 8명
○ 제출일자 : 2024년 8월 16일
○ 회부일자 : 2024년 8월 19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직자들이 일과 시간 외 전화나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도록 연결되지 않을 권리로 일컬어지는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정비 (안 제3조, 안 제7조제1항)

나. 휴식권 보장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의3)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선거 사무 수행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규정 개정 (안 제18조제1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2)

다. 현행조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붙임 3)

Ⅲ. 검토의견

1. 개정목적

○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일과시간 외 전화나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로 일컬어지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식권 보장 및 공무원 사생활 침해 방지(신설)

- 공무원의 일과 시간 외 휴식권을 보장하고 각종 통신기기를 통해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문 신설

나. (안 제18조제13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휴가 개정

- 당초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없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규정되었던 선거사무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이 상위법령에 신설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

3. 검토의견

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연장근로를 막고,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며, 교육감이 소속 지방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나. 최근 스마트워크시대의 도래로 시공의 제약 없이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사생활에도 침해를 주고 있음

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러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퇴근 후 업무 카톡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을 발의한 바 있으며,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에서는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시하여 현재 시행중 임

라. 관련 조항의 신설로 충분한 휴식권과 사생활 보장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 증진은 물론 일과시간 이외에 가정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어 선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

발의일/ 회부일	주요내용
2016.6.22. /2016.6.23.	제6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장)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다만, 본 개정안이 자칫 교육감의 선언적인 노력만을 명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등 공직분위기와 사회적인 공감대가 함께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관련 조례는 세종시교육청 소속의 다양한 직종 가운데 우선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에는 교원, 교육공무직종 등에 대한 사생활보장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바. 또한, 근무시간 외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각 기관 운영 및 정상적인 교육활동 등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 끝으로, 기존의 선거사무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 조항을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2024. 4. 2.)에 따라 새롭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의성 있는 개정으로 사료됨

참고 사항

○ 사생활 보호 관련 타 시·도교육청 관련 조례 운영 현황(3곳)

교육청	자치법규명	관련조항 신설일자
서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의 3	2018.3.22
경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	2019.4.29.
인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2018.1.2.

【참고자료】

붙임 1. 개정조례안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현행조례

문 의 처
044)300-7510

붙임 1 **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전체”를 “주민 전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직장분위기”를 “직장 분위기”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사생활 보장)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에 따라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주민 전체----------. ----------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7조(근검·절약) ① ---------- 직장 분위기----------.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사생활 보장) 교육감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 ⑫ (생략)	제18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교육감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⑬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에 따라 선거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붙임 3 관계 법령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

붙임 5 **현행조례**

현 행 조 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1.>

제2조(복무선서)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11.10., 2021.12.1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의2(근무시간 등의 변경)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4.2.10., 2014.11.3.>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및 그 밖에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9.3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신설 2021.12.10.>

제9조(출장공무원) 삭제<2017.11.10.>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2021.12.10.>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11.10.>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23.12.18.>

[제목개정 2023.12.18.]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0.]

② 삭제<2016.12.2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2019.9.30.>

제16조 삭제<2019.9.30.>

제17조 삭제<2019.9.30.>

제17조의2 삭제<2019.9.30.>

제18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4.11.3., 2017.11.10.>

② 삭제<2021.12.10.>

③ 삭제<2017.11.1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2.21.>

⑤ 삭제<2021.12.10.>

⑥ 삭제<2017.11.10.>

⑦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1.3., 개정

2016.12.20., 2019.9.30, 2023.12.1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회로 나누어 사용가능)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가능)

⑧ 제7항의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신설 2014.11.3., 2017.11.10.>[종전 제8항은 제9항로 이동<2016.12.20.>]

⑨ 교육감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11.3.>[종전 제8항에서 이동<2016.12.20.>]

⑩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6.12.20.>

⑪ 삭제<2021.12.10.>

⑫ 지방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청・학교간 업무 연락 체계유지, 학교시설보안 유지・관리 및 학생교육활동지원 등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

⑬ 교육감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1.12.10.>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12.10.]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